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 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8. 8. 청구인에게 한 「장애등급외 결정」을 취소한다.

## 이 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양측 상지 및 하지기능장애 등급신청을 위해 2018. 7. ○. 장애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서류를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송부하여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018. 8. ○. 양측 상지 및 하지기능장애 등급외로 결정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8. ○.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보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년경부터 당뇨병과 손발 위약과 감각 이사로 다발성 말초신경병을 앓게 되어 지체장애가 발생하여 현재는 근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지에 감각자체가 없기 때문에 보행 시 못이나 돌 등을 밟아도 아무런 통증을 느낄 수 없는 등 독립적인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일상생활에 보호자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법에 규정된 사항이 없기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맞는 등급판정을 해 달라고 주장한다.

###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등급신청에 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결정된 사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결정 결과를 통보한 것이고, 국민연금공단에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65호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진단서 등을 기초로 판단하여 결정한 사항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진 처분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0조의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장애등급심사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20호)

「장애등급판정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65호)

##### 나. 사실관계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하지관절장애 등급신청을 위해 2018. 7. ○. 장애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서류를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으로 송부하였다.

2) 2018. 7. ○. 장애등급심사 요청서를 접수받은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018. 7. ○. 의학자문회의(자문의사 2인)를 거쳐 2018. 8. ○. 양측 상지 및 하지기능장애 등급외로 결정하였다.

3) 피청구인은 2018. 8. ○. 장애등급결정서(양측 상지기능장애 및 양측 하지 기능장애 등급외)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4) 위 2)의 판정 결과에 불복한 청구인은 2018. 8. ○. 본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다. 판 단

### 1) 먼저 처분의 근거 및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2) 다음으로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8. 7. ○. 양측 상지기능장애와 양측하지기능장애 등급신청을 위하여 장애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은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양측 상지기능장애에 대하여는 “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척추(척추안의 중추신경)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인해 팔·다리가 마비되어 근력(근육의 힘)이 3등급 이하로 저하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기능장애로 판정합니다. 감각 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않으며 신경학적인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 소견이 서로 일치하여야 합니다. 장애진단서 및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년 ○월 입원초기평가지상 양쪽 상지 근력 5등급으로 기재된 점, 근전도 검사 결과지상 신경 손상 정도 및 기타 치료경과, 질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장애등급에 해당될 정도의 마비가 있는 상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급외로 판정합니다.”와 같은 이유로 양측 상지기능 장애 등급외로 판정하였고,

양측 하지기능장애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척수(척추 안의 중추신경)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인해 팔·다리가 마비되어 근력(근육의 힘)이 ○등급 이하로 저하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기능장애로 판정합니다. 감각 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않으며 신경학적인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 소견이 서로 일치하여야 합니다. 장애진단서 및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년 ○월 입원초기평가지상 양쪽 하지 근력 ○등급으로 기재된 점, 근전도 검사 결과지상 신경 손상 정도 및 기타 치료경과, 질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장애등급에 해당될 정도의 마비가 있는 상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급외로 판정합니다.”와 같은 이유로 양측 하지기능장애 등급외로 판정한바, 이러한 국민연금공단의 전문심사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면 심사내용이나 절차에 있어 어떤 위법이나 부당이 없다고 할 것이다.

##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